

무배당 Top3 한방치료보험(갱신형)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Top3 한방치료보험(갱신형)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7년 3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Top3 한방치료보험(갱신형)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세목

명칭	세목	
무배당 Top3 한방치료보험(갱신형)	암 한방치료 보장계약	만기지급형
	급성심근경색증 한방치료 보장계약	만기지급형
	뇌출혈 한방치료 보장계약	만기지급형
	기타 한방치료 보장계약	만기지급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납	0세 ~ 60세	월납
갱신계약	10년 만기	전기납	10세 ~ 85세	
	100세 만기	전기납	86세 ~ 95세	

* 다만, 0세는 태아 가입을 제외함.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료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로 납부되는 경우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에 대하여 영업보험료의 1%를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당월분 포함)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할인하며, 최대 6개월분(당월분 제외)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8.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 공시이율(최초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체결시점,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한다)+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보험금 심사 관련사항

회사는 약관 제 11 조('접약'의 정의)의 "보장대상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접약", 제 12 조('약침'의 정의)의 "보장대상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약침"으로 보험금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한 의사협회의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지급 여부를 심사한다.

14. 갱신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 일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보험료납입기일(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납입기일을 준용한다)까지 갱신계약의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이 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1) 암 한방치료 보장계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유방암, 남녘생식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다.

(2) 급성심근경색증 한방치료 보장계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7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3) 뇌출혈 한방치료 보장계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8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 ‘가’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1)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바’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

(2) 약관 제33조(계약의 소멸)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가’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안내 및 설명을 한다.

마. ‘가’항에 따라 갱신할 때에는 갱신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한다. 다만, 갱신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85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 만기로 갱신한다.

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로 한다.

사. ‘가’항에 따라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 다만, 갱신전 계약의 약관이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약관을 준용한다.

아.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한다)을 보장개시일로 한다.

자.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각 해당 내용을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안내한다.

(1) ‘나’항 및 ‘다’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

(2) ‘사’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3) ‘자’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내용

카.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5.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다.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온라인 채널 제외)으로 한다.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의 90%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의 연령증가 등에 따른 갱신시점의 예상 영업보험료를 최대 갱신 가능나이 또는 75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개 이상을 안내한다.

(별첨 제1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2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3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 청약서의 서식